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운영회 의원 외 23명

나. 의안번호 : 제2154호

다. 제출일자 : 2024. 10. 15.

라. 회부일자 : 2024. 10. 18.

### 2. 주 문

-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 3. 제안이유

- 최근 FC서울의 링가드, BTS 슈가 등 유명인들이 각각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음.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운전에는 원동기장치 또는

그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무면허자의 이용이 자유롭고, 위법운전 단속이 미미하여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PM 교통사고는 2019년 총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5.3배 늘었으며, 사망·부상을 포함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증가함. PM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기준 음주운전 1,529건 무면허 운전 4,375건이 적발되었음
- PM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되고 있으며 앞서 파리, 마드리드, 몬트리올, 멜버른 등 해외 도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퇴출을 결정하였음
-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단속 지역을 분담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5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현재까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의 면허 인증 소홀로 청소년이나 무면허자의 운전이 자유로운 상황임
- 이에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의 신속한 제정과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촉구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sup>1)</sup>

○ 서울시장 (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원안가결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과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 방지와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자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함

#### 5. 이 송 처

가.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

---

1)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市 보행자전거과-6731호(2024.10.30.))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 요

- 동 건의안은 유명인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발 및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의 면허 인증 소홀 등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한 개별 법률제정과 대여사업자 면허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를 건의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sup>2)</sup>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각종 안전 이용 및 통행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 특히 2021년 5월 법이 개정<sup>3)</sup>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정의와 통행 방법, 운전면허

---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3)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2021.5.13.시행)

- 운전면허 필요, 운전자 주의의무관련 처벌조항 추가(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

여부4), 헬멧 착용 유무,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등에 대한 사항과 벌칙을 규정하여 위반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통행 불가)	도로교통법 제13조의 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3조
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 1의 5
승차인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Throttle): 2명 (범칙금 4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의 4
안전모	착용의무(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 과태료 2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8의2
등화장치	야간 통행 시, 전조등과 미등 또는 발광장치 의무 (범칙금 1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57의2
음주운전	금지(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64의2,3
어린이 운전	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도로교통법 제1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1의2

-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시장 규모가 늘어난 만큼 관련 사고건수 또한 2019년 134건에서 2023년 500건으로 274%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4)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16세 이상 취득 가능)가 필요  
※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건수

(단위: 건, 명)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건수	전국	7,854	447	897	1,735	2,386	2,389
	서울	1,872	134	387	445	406	500
사망자수	전국	87	8	10	19	26	24
	서울	11	1	1	1	5	3
부상자수	전국	8,665	473	985	1,901	2,684	2,622
	서울	2,044	139	420	489	449	547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 문제는 전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며 캐나다 몬트리올,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등에 서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여 도심 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퇴출<sup>5)6)</sup>하였으며, 서울시 또한 올해 11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계획<sup>7)</sup>을 발표 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도모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운행에 따른 단속 현황<sup>8)</sup>을 살펴보면

5) 시민들 안전 위해 전동 킥보드 퇴출 확정된 유럽의 유명 도시(매일경제, 2024.9.24.)

- 캐나다 몬트리올: 2020년부터 모든 종류의 전동 킥보드 탑승 금지
- 프랑스 파리: 2023년 9월부터 전동킥보드 사용 전면 금지
-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11월 전동 킥보드 사용을 임시로 제한

6) 호주 멜버른도 공유 전동 킥보드 ‘퇴출’ 결정(KBS, 2024.8.16.)

- 8. 13일 호주 멜버른 시의회가 의원 6대 4의 찬성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을 전면 금지

7)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시민 80% 보행 중 불편 겪어(2024.11.5.)

- 사고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 올해 중 첫 선정·시범운영 후 확대 계획
- 불법주정차 시 유예시간 없이 견인, 공무원 직접 견인 확대 등 특별대책 가동
- 시민 1천명 대상 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7명 민간대여 전면 금지 ‘찬성’

8)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운행 단속 현황

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순으로 단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특히,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공유PM)의 경우 현재 5개 업체 44,663대<sup>9)</sup>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상 인·허가 또는 등록사업이 아닌 사업자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1.5.) 이후~2024.8.기준

구 분	계	2021년 (5.13이후)	2022년	2023년	~2024.8.19.
<b>합 계</b>	<b>144,943</b>	<b>19,321</b>	<b>51,387</b>	<b>46,689</b>	<b>27,546</b>
음주운전	4,646	665	1,8025	1,529	650
무면허	15,453	1,440	4,375	5,952	3,686
안전모 미착용	113,070	15,512	40,367	35,856	21,335
승차정원 위반	1,130	149	515	341	125
기타	10,644	1,555	4,328	3,011	1,750

(자료 출처: 자치경찰 위원회, 기타 부분은 야간점등위반, 보도주행 등)

9)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현황 (서울시 제출자료)

연번	회 사 명	브랜드명	운영대수(대)	운영지역('24.8월 기준)
			'24. 8.	
1	(주)더스윙	스윙	13,021	전 자치구(25개구)
2	(주)울룰로	키크고잉*	10,700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5개구)
3	(주)빔모빌리티코리아	빔	9,770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마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12개구)
4	(주)피유엠피	쌍쌍*	8,050	은평,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7개구)
5	(주)지바이크	지쿠	3,122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16개구)
<b>계</b>			<b>44,663</b>	

※ (\* 표시) 2024.8.26. '키크고잉'을 운영하는 울룰로가 '쌍쌍'을 운영하는 피유엠피와 합병

권한이 미비하다는 점을 비취볼 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포함된 개별 법률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아울러, 동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